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3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정준호 의원(1명)

찬 성 자: 김동욱, 김성준, 김원태,
김종길, 민병주,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송도호, 신복자, 오금란,
유만희, 유정인, 윤영희,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최기찬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생성형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학습격차 심화, 기술 의존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윤리·사회성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역기능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환경에서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로 4차 산업혁명 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 나. 기본계획에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역기능 예방 교육 등 방지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역기능 예방 교육 등 방지 대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생략)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활 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4차 산업혁명 교육의 역기능 예방교육 등 방지대책</u>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역기능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및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역기능 방지 대책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